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3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4.

정 순 옥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정순옥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
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안은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.
- 안 제2조~3조는 공개대상, 공개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는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는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

【정순옥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3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5.

발의자 : 정순옥, 도하석, 이진환,
손범구,김장관,황국주,
남현주,정창근,이선주,
박종길

1. 제안이유

-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공개대상, 공개시기 및 방법(안 제2조~3조)
- 다.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(안 제4조)
- 라. 예산낭비 등의 심사(안 제5조)
- 마. 성과금 지급 및 포상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
2.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
3.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4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공개시기 및 방법)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(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) ① 구청장은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시정요구·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예산낭비 등의 심사)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.

제6조(성과금 지급 및 포상)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, 제48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법령 】

□ 지방재정법

- 제48조(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,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8조의2(예산 · 기금의 불법지출 ·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)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

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1조(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)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,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
 2.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
 3.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. 다만, 전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·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,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·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(이하 “보조기관등”이라 한다)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54조(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·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,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·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29.>

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

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[본조신설 2011. 9. 6.]

제54조의3(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사유로 「국민 제안 규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1.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

2.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4. 28.]